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

(대표발의: 채우진 의원)

의안 번호	22-33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: 2022. 3. .

발의자: 강명숙, 김성희, 김영미, 김진천,
채우진, 최은하, 한일용

1. 제안이유

- 가. 관광객, 지역주민,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,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등 공정관광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나. 마포구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과 관광지의 지역주민,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공정한 관광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(안 제5조)
- 다.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0조)
- 라. 공정관광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마.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관광기본법」 제6조
- 나.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, 제76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2. 3. 4. ~ 2022. 3. 10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마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공정관광"이란 관광객, 지역주민,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,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·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·환원되며,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·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계획)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의 정책방향
2.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
3.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4.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
5. 민·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
6.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
7. 그 밖에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
3. 그 밖에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

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의원

2. 관광·사회·건축·도시계획·환경·법률 등 관련 전문가

3.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법인·단체의 대표

4.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주민

5.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구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.

제8조(위원회의 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

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

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심의·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2.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·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

⑤ 제4항 각 호 외에도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⑥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

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지원 사업)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
2.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
3.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
4.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
5.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·마케팅 사업
6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2조(공정관광 지원센터)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관광 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재정지원)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·절차 등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

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4조(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)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광진흥기관에 우선적으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「관광기본법」

제6조(지방자치단체의 협조)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전문개정 2007. 12. 21.>

「관광진흥법」

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, 관광 홍보물의 제작, 관광 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·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·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(屋外廣告物)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6.>

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6. 2. 3.>
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5.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
제76조(재정지원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,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·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4. 5.>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제10조 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일자리국 관광과 어윤남
연 락 처	02-3153-8655